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분야 및 자격·학력·경력 기준을 정함. (안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학력 기준과 관련 학과를 예시하고 예시

하지 아니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한 인정 기준 및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의 확인사항을 정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의전화 : 044-203-2749

- 전자우편 : hyunna@korea.kr

- 팩스 : 044-203-3475